

---

## 제3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

2017. 10. 16.

국 가 기 록 관 리 혁 신 T/F

## 제3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 □ 회의 개요

- (일 시) 2017. 10. 13.(금), 10:30~12:30(120')
-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8층)
- (참석인원) 위원장, 위원, 지원팀 등 20여명
  - 외부(11인) : 안병우(위원장), 심성보, 최재희, 조영삼, 홍성덕, 설문원, 김창조, 정경희, 현문수, 이상민, 전진한(위원)
  - 내부(7인) : 정책기획과장, 지원팀 등
    - ※ 외부 위원 중 임진희, 이영남, 이원규 위원 불참
- (회의내용)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분과별 추진현황 및 토의안건 논의

### □ 주요 논의 내용

#### < 회의록 등 공개 >

- (회의록공개)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위원장) → 공개 결정
- (회의자료·분과회의 결과 등) 현장과 소통 강화 위해 첨부 회의자료 및 분과회의 결과 작성·공개 필요(심성보)
  - 게시판에 의견달기 기능 등을 반영하여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음(김형국)
  -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 등은 제외하고 공개

#### < 분과별 과제 관련 >

- (1분과) 「국가기록관리 폐단혁신」 11개 과제 확정하여 10월말까지 자료 정리·조사 등을 추진하고, 2·3과제는 일정만 확정함(심성보)

- 행정관료 중심의 조직운영이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고, ICA 총회는 정치성보다는 전문성 왜곡 측면에서도 검토 필요(이상민)
- 1과제 관련, BH협의 및 장관보고(현안보고 등) 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상 추진이 어려워 조사권 등 획기적인 방안 필요(조영삼)
- 조사권한을 갖기는 어려우나(위원장, 설문원), 기록원의 자료조사 및 제공, 내부직원들의 증언(이상민, 홍성덕, 정경희) 등 최대한의 노력 필요
- ⇒ 국가기록원 인사운영, ICA총회에 ESTICA 사무총장 선출 문제를 포함. 중대 사항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별도 조치 고려(위원장)
- **(2분과)** 기존 검토과제 일부 조정 및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혁신 중간결과 검토·반영하여 9개 과제로 확정
  - 기록원 - 기록관 간 지도감독체계에서 공동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 등 외부 전문직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이상민)
  - 기록관 강화는 유사기능통합 보다는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시, 정보공개전문관 도입 필요(조영삼)
- **(3분과)** 지정기록제도 개선 등 단기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확정

### < 자료 공유 등 >

- **(자료제출)**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문서화 필요(심성보)
  - 과제별 제공자료는 총괄팀장 메모보고 후 사안별로 등록

## □ 향후 계획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10.27.)

**<위원 소개>**

위원장 :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한 위원님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홍성덕위원님은 처음부터 위원이었는데 전체회의는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홍성덕 :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조금 늦게 합류하게 된 한성대 정경희 위원님 오셨음

정경희 :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님 오셨음

전진한 : 알권리 연구소 전진한임. 잘 부탁드립니다

**<혁신 T/F 회의록 공개 등>**

위원장 : 안전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2차 회의록 문제가 있는데, 몇 분이 수정의견을 주셨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확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심성보 : 지난 전체회의에서 분과회의 결과도 첨부해서 공개하자는 내용 있었음. 21일 전에 있었던 분과회의들에 대해, 오늘 회의에 첨부해서 할지, 별도로 할지 판단이 필요

김형국 : 분과회의는 분과회의에서 결정해서 주시면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후 공개하려고 했음. 전체회의에 올려서 결정할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 전체회의 보고사항 중에 분과회의 결과 보고사항이 포함됨. 전체

보고사항에 포함이 되므로 이것으로 대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모든 분과가 논의한 것을 올려야 하는지 판단 필요

설문원 :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심성보 : 지난 번 회의자료에 첨부되어 있었음. 2차 회의 때 1분과의  
경우, 1차회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음. 당연히 회의결과에 첨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음. 첨부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함.  
전체회의 때마다 분과회의결과를 포함한 회의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습정리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심성보 위원님의 의견대로면 전체회의 자료를 공개하면 될 듯함

심성보 : 분과 회의에 대한 한 쪽짜리 결과보고라도 있었으면 좋겠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됨. 두 버전 모두를 남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음

김형국 : 1차 회의 때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분과별 논의한  
것들이 반영될 것임

설문원 : 문제는 없지만 전체회의는 회의결과가 다 남음. 분과회의는 자연  
스럽게 논의하는 것이므로 요약하는 정도면 될 듯함

김형국 : 월요일에 지난 분과회의 결과는 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텔레그램  
올려 검토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 분과회의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되는 사항을 공개하면 됨

심성보 : 회의자료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안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정되면 지원팀에서 올려주시면 될 듯함

설문원 : 이 자료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인지

김형국 : 지금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 축적할 예정임

심성보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공개된 후 반응이 뜨거움. 예를 들면 회의자료만 공개하는 것은 반쪽 공개라는 의견도 있었음. 회의 내용 중에 질문들이 많았음. 조회 수가 당일에는 120여회였는데, 지금은 300여회가 넘어 꽤 관심이 높음. 현장성,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공개문제는 중요함. 공개를 전제로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판단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전진한 : 정보공개법상 원래 발언자를 공개하지 않음. 내용은 공개하되 발언자까지 다 공개해 두었음. 발언자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도 발언자명은 제외하고 공개했는데 국회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괜찮을 듯함

심성보 : 1차회의에서 공개하도록 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

김창조 : 정보공개법에 의사결정정보가 있음. 확정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함. 최종 결정되면 공개하자는 것인데,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함

위원장 : 회의자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되는 사안들은 일정기간 동안 의사형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좋을 듯함

정경희 : 비공개 사유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비공개할 경우 수궁할 것임

김창조 : 국가는 자연인과 같음. 내부에서 생각하는 의견들이 외부로 나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중인 내용까지 다 공개하자고 한 것임

이상민 :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소통이 더 중요함

조영삼 : 논의하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김형국 :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안들은 특별히 비공개할 사안은 아닌 듯함

설문원 : 1분과는 판단 필요. 특정인을 거론하는 내용은 공개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비공개 필요

김형국 :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받고 소통하겠지만, 홈페이지 게시판을 만들면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기능도 검토하여 보고하겠음

설문원 :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부분은 빼고 공개하는 것으로 함

김창조 : 미국이나 일본에는 Public 코멘트 제도가 있음. 정책을 결정하면 국민들이 코멘트를 하는 것임. 우리제도는 없는데, 사실상 Public 코멘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위원장 : 전체회의 결과와 자료, 분과회의 결과도 공개하되, 비공개 요청되는 부분은 공개를 늦추는 방식으로 하겠음

위원장 : 총괄팀 보고내용이 있는지?

총괄팀 : 회의록 2차회의 전체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송했음. 수정의견 제출한 내용을 수정했음. 오늘 논의되는 대로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겠음. 회의록 공개는 1차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혁신T/F 게시판을 정보기반과에 요청하여 별도의 게시판을 개설할 예정임. 그리고 위원 추가위촉은 총 14분의 위원이 위촉되게 되었고, 위촉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음. 지원팀 인력도 10월 셋째 주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게시판에 의견개진 기능도 추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위원장 : 감사함. 위촉장도 받았고, 열심히 일 하셔야 함

심성보 : 게시판에 글쓰기 기능이 있는지, 한시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인지, T/F가 끝나면 폐쇄한다는 것인지

김형국 : 글쓰기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하였음

심성보 : 한시적이라는 표현은 무엇인지, T/F가 완료되면 폐쇄하는 것인지

안대회 : 한시적으로 게시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T/F가 종료되어도 그대로 유지할 것임. 글쓰기 정도만 추가로 할 것임

심성보 : 분과별 지원팀 추가 직원 인사에 지난번 회의 때 학예직 말고 기록연구직 등 고민이 있었음.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람

김형국 : 기록, 사서, 공업 중에 추가 선정을 진행 중임. 4명 정도 위촉 예정이며 기록직, 공업직 등이 될 것 같음

위원장 : 조속히 지원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람

설문원 : 각 분과마다 필요한 인원에 대해 의견을 받으시면 좋겠음

### **<분과별 진행상황 및 토의 안건>**

위원장 : 분과별 추진현황과 토의사항으로 넘어가겠음. 제1분과 부탁드립니다

심성보 : 1과제 대상 기록원 내부직원 의견수렴이 있었음. <붙임1>이 누락되어 있음. 제가 보고 후 누락된 붙임은 구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심성보 : 과제별 세부주제를 분과 내에서 정리를 했음. 국가기록관리 혁신페단 1과제는 세부과제 11개로 확정하여 상정. 1차 자료정리 및 사안별 진행을 하고자 함. 관련 담당자들의 면담을 사안별로 10월말까지 진행하겠음. 2과제 3과제는 과제명을 유지하고 절차와 일정을 잡았음. 대략 10월말까지 1차 진행을 할 예정임. 자료조사 및 제공은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위원장과 1분과 위원들에게 제공되었음. 현재로서는 1분과 위원들이 먼저 검토하고, 진행하려 함. 과제들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람

전진한 : 자료를 전체 공개는 하지 않으시는지

심성보 : 자료제출 및 공유 등에 대한 분과별 범위, 수위 등을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함

이상민 : 안전에 대해 의견을 얘기했으면 좋겠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음. 전문성 문제 중 국가기록원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로, 행정직이 국가기록원을 장악하게 됨. 직제와 보직을 행정직들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직 과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왜곡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 실제로 드러난 것은 직제상의 변화와 보직을 맡았던 행정직 과장들의 숫자만 나타남. 2-2에는 나타나지 않음. 국가기록원의 적폐는 기본적으로 고위 행정관료들의 적폐임.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이 가장 컸음.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되었음. 기록원의 전문직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 회의 등에 전문직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가 있어서 가능했음. 제가 나올 때는 학예직들은 외부 스페이들이니 참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중요사안에서 배제됨.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부 전문직들임. 고위 행정관료들이 비전문적인 문제에 간섭하고 통제한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복수직제를 통해 전문직의 자리에 행정관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심성보 : 2-3과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유념하겠음

이상민 : ICA총회는 총회가 정치화되었다는 건지, 총회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이 배제되었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ICA총회가 정치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봄. 오히려 전문성을 왜곡시켰다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면 2015년 ESTICA 총회가 있었는데, 사이먼 추가 사무총장을 사임하기로 해서, 한국에 있는 민간 쪽에 지명을 요청. 기록학회와 협회에서 공동추대해서, 저를 의장으로, 최재희박사는 재무관으로 추대했으나,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반대하는 메일을 보냈음. 총회

이사회를 할 때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켰음. 민간에서 다른 사람을 추대하지 않았고, 나중에 국가기록원장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메일을 보냄. 총회 이사회 하는 날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 대표들을 만나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논란을 빚기 곤란하니까 저는 사퇴를 했고, 최재희 박사는 학회나 협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그런 정도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봄

최재희 : 저는 기록원에서 반대를 할 수 있다고 봄

이상민 : 기록원에서 왜 반대한지 보자는 것임

최재희 : 서울총회 문제는 준비과정에서 위원들이 바뀌는 등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고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함. 다 아시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설문원 : 이상민 박사님이 하신 말씀도 규명필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최재희 : 표면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네이밍으로 일단은 진행하자는 것임

전진한 : 준비과정 말고, 행사 자체에 있어 발제자 등의 문제 등이 있었음

위원장 : 이상민 박사님 제기한 문제도 3-1에 포함해 주시기 바람

조영삼 : 제공된 자료에 봉하 e-지원 관련 '노무현전대통령 기록물 회수 방안 보고'라는 2008년 6월 3일에 국가기록원장이 장관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가 있음. 가지고 오지는 않았음. 마지막 박스 부분에 유출 책임 점검 등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BH와 긴밀한 협의 후 추진 요청이 있음. 이른바 폐단을 확인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이 사례와 같이 국가기록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문서를 지원팀에 요청하였는데, 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등록된 기록이 1건 밖에 없다는 답을 받았음. 이런 상태로는 1분과 활동 못함. 기록이 등록되지 않았고, 제공된 자료도 나름대로 민감한 자료이나, 11개 폐단의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함. 만약 권한이 없다면 적폐청산과 관련한 논의를 우리가 할 의미가 없음. 결국 이런 사안들이 적폐로 지적되었으나, 증언이나 정황만 있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임. 1과제를 제외하든지, 감사관을 붙여 조사권이 필요함. 붙임자료와 관련하여 의도적 누락인지는 모르겠으나, 의견수렴 결과 폐단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사활동은 못하겠음. 이상민 박사님 이야기는 얘기로 전해지는 것임. 확인이 불가능함. 당시 기록원장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봄. 행안부 장관이 적폐없다라고 선언한 보도도 나옴.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낌. 저는 1분과의 활동을 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음을 밝힘

위원장 : 1분과 1과제 내용을 바라볼 때 법령에 위반된 것이 있는가, 기록전문가의 윤리강령 등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를 말씀드렸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으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이상의 차원의 행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기록전문가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임. 그것을 밝혀 낼 수 있는 기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큰 난점이라고 생각함. 우리가 조사권한을 갖기는 쉽지 않음

이상민 : 불법적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문서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다수의 증언과 정황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서 의미를 두어야 함. 8년 동안 소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향후에 정권, 원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진술에 소극적인 것임. 진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는 방안 마련 필요함.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엑셀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던 것임. 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 어딘가는 있을 것임.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있을 것임, 누군가는 건드려 주어야 함.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조금 피해봤을 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가해에 가담한 것임.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

홍성덕 : 등록된 문건만으로는 불가능. 내부적으로는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 등록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을 것임. 직원들의 진술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곤란함. 추정에 머무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임

박성진 : 사실 담당자로서 목적에 합당한 자료들을 취합하기가 쉽지는 않음. 조영삼위원님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현안보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음. 현안보고 등으로만 검색을 한 경우이고, 장관 보고 자료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함. 문서대장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이고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내부직원들의 경우 상당부분 무기력에 빠져 있음. 직원들도 T/F에 기대를 안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특정사안에 대해 밝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었음. 이상민 위원님 얘기와도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다만, 진술을 의도적으로 피한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받았음

- 이상민 : 다른 분과 관련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박성진 : 결성되기 전에 직원들이 T/F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함.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음. 시간의 반 이상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T/F구성과 활동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 김창조 : 1분과의 사실조사 권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음.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가치를 훼손 정도에 따라 보면 가장 심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임.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됨. 그리고 업무상 개선이 필요하다 등 다양하게 섞여 있음.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됨. 가능한 한 기록원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설문원 : 우리 T/F의 역할, 어느 정도까지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분과 1과제 폐단조사의 목적이 발본색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함. 기록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법령 위배 사항이나 기록전문가 윤리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조영삼 위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함.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
- 조영삼 : 1분과 1과제가 탄력받고 일정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단지 2, 3분과의 과제들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임. T/F가 탄력을 받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봄. 1분과가 한계를 지어 놓고 성과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라면 아주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음. 기록원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저는 T/F에 참여한 의미를 거기에서 찾고 있음. 1분과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 방책이 없다면 저는 이 과제에서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빠질 생각임. 차라리 2, 3과제에 가서 좀 더 실무적인 일을 하겠음. 이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저의 개인적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임. 밖에 있는 다른 후배들 동료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음

위원장 : 1과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장벽에 부딪히고, 장벽의 핵심은 증거가 되는 기록의 문제임. 너무 일찍 포기할 필요 없음

조영삼 : 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 없다는 부분도 밝힐 것임

위원장 : 현안보고라는 것이 있고, 더 있다고 하니, 조사를 해보는 것 필요

설문원 : 공식 문서만 가지고 한계가 있음. 조사를 하다보면 의문의 지점이 나옴.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 기록원이 답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조사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음

조영삼 : 문건을 보면서 이 사항과 관련되어 인사에 영향을 주었겠구나 라는 강한 인상을 받음.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누군가는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듦. 확인하고 싶으나 그런데 방법이 없음. 폐단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표현으로 부역을 해서 승진을 했다면 이야기를 해야 함. 중요한 부분임. 추상적으로 성명하나 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님. 우리가 접근할 권한 등이 없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음

위원장 :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고 찾아봐야 함

이상민 : 민간 전문직 원장이 오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직들이 합심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됨

조영삼 : 저는 이 부분은 빠지겠음

이승억 : 이런 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문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함. 공식적으로 등록된 문건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증거력이나 진위여부에 의미부여 가능. 등록된 문서만으로는 불가능함. 담당자가 갖고 있을 파일을 배제하면 자료를 통한 진상규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음. 기록원 안팎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문헌들을 조사 필요. 브리핑 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위원장 : 희망을 갖고 조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타당함. 의혹은 강한데 우리 수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음

정경희 :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 찾는 다기 보다는 내부에서 드러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함. 갖고 있는 내부의 기록연구사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김형국 : 지원팀에서 최대한 찾으려고 할 것임. 이것들을 갖고 있다면 담당자들이 갖고 있을 것 같음. 우선 면담을 추진하고, 그분들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다른 사안들도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다방면에 노력 필요

최재희 : 3-3의 4대강 영상기록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음. 이런 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공식문서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교가 될 것 같음

김형국 : 초기의 자료 조사 단계로 감사원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음. 그리고 제목도 정확히는 녹색뉴딜사업으로 되어 있음

최재희 : 처음에는 4대강 영상기록화 사업이었음

심성보 : 1과제 11개 과제에 대해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음.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3분과도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위원장 : 국가기록원의 인력배치를 포함해서 서울총회 EASTICA 사무총장 인선 등 대외 교류부분 포함시키고, 4대강 사업은 녹색뉴딜이면 녹색뉴딜(4대강) 등으로 정확히 명기 필요. 기록의 확보 문제는 예상했던 것으로 최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 결론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함. 중대한 위반 사항, 법령 위반사항인데도 기록이 없는 경우, 별도의 건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어떤 지나간 시절의 폐단도 한 번에 다 밝혀 지지는 않음.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이 필요. 미진하게 남은 것은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여 규명하면 될 것임

최재희 : 저도 전적으로 조위원님 얘기에 동의함. 거취표명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셨으니 정리는 필요함

심성보 : 조영삼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동의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정리라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리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함. 자료요청서와 답변서의 서식이 필요함. 공식적이며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함.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함. 예를 들면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고 확인한 것인가에 대한 지원팀에 답변 요청하고, 답변을 받으면 됨. 사후에 정확한 요청, 조사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음. 이 시점은 빠르다고 생각함. 조영삼 위원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나 1과제를 하셔야 함

조영삼 : 자료제출요청을 하겠음. 제가 알고 있는 관행상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판단해서 현안사항 보고 요청한 것임. 국가기록원에서 보고한 문건이 행정안전부에도 없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함. 그것을 기록



으로 남겨야 함. 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기록도 없는데, 부처의 기록관리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위원장 : 그런 부분은 조사 부탁드립니다. 1분과 내용은 정리하겠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란 무엇인지 박성진 연구관님 얘기바람

박성진 : 이상민 위원님이 한 말씀과 같음. 기록관리라는 주요 정책을 원장이나 행정직들이 하는 것을 하는 구조, 기록전시 등을 계획을 만들면 테마 등이 바뀌는 것 등을 경험하다보니까. 연구직으로 와서 창의적으로 일해 본적이 없고, 기록을 가지고 일을 해 본적이 없다 등의 이야기 임. 기록원 구조나 체계 등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하는 것임

설문원 : 다 동의는 되지만 문제를 그런 식으로만 돌리면 해결점이 없음. 사안들을 촘촘하게 보면, 전문직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고 생각함. 기록원 내부나 외부에서도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짐. 제도만의 문제는 아님

설문원 : 1분과는 11개과제와 관련한 문제점 및 시사점 등이 나오면 그것들을 반영할 계획임.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1분과로 가고,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가 우리 분과로 옴. 과제별 세부과제는 일부 조정하였음. 지난번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혁신과 관련된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넣은 것임. 실제 기록이 생산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접근권이나 청구권이 훼손될 경우,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김익한 교수님이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연계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평가도구,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식의 레코드스케줄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익침해 제도와 연계 가능할 것임. 3분과의 대통령기록의 범주와 관리 대상 정의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록 범주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도록 하고, 남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론적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과제로 한 것임. 두 번째 과제는 기록분류체계 재설계에 대한 부분임. 현재 업무분류체계를 기록분류체계가 수용하고 있는 것을 기록분류체계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7번은 기록공개제도 개선, 심사제도 도입, 서비스 강화 3가지 세부과제로 함. 8과제는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부분이 과제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기록관리와 관련해서 국가나 공공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기 보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할 민간기록관리진흥법 제정을 과제로 함. 이 모든 과제에 대해 촘촘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각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구체화할 예정임. 공공기록관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제도측면에서 기록관 조직 및 전문성 관련된 부분이 있음. 기록관 1인 기록연구사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음. 기록관 단위에서 전문적 기록관리가 되지 않으면 국가기록관리가 되지 않음. 조직체계에서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관의 규모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원칙으로, 전문인력도 의무 배치 사항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배치기준을 달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함. 기록관 설치 단위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설치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함. 물론 의무설치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님.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여건에 따라 통합기록관을 운영하거나 설치단위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옴. 다음으로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강화 부분인데, 본격적인 RM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인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기

구로 역할을 재정의 함으로써 인력확보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봄. 그래서 RM과 관련된 다양한 전자기록을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임. 기관의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전체를 확인할 수 없음. 접근권한이 없음.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개진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조정 필요함. 이관 대상과 관련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상을 30년 이상만 해야 하는지, 영구기록물만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음. 이와함께 보존기간 중 준영구 존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미는 있지만,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해서 스케줄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준영구와 같은 보존기간은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나옴. 기록정보 공개 서비스 확대 부분에서는 5년 주기 재분류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기록관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레코드 센터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재분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비공개 상한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된 경우, 5년주기의 재분류는 비효율적임. 지방기록물관리에 관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지방 기록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위원장 :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 바람. 과제 9개는 오늘 확정하실 것인지?

설문원 : 공공부분은 과제를 확정해도 될 듯함

이상민 : 가장 핵심적인 것,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나임. 기록원, 기록관 전문직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함. 외부 전문직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었으면 좋겠음. 전향적인 부분은 있지만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아카이브화 하는 것도 필요함. 영구기록에 대한 지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려움. 기관에서 기록을 잘 아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음.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을 늘려 주거나, 영구기록 사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설문원 : 2-3 관련 부분인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었음. 행정정보 데이터셋의 경우 물리적으로 기록원 이관은 불가능 함. 단, 논리적 통제를 통해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국가기록원이 무엇이 국가기록인지에 대한 통제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사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록관리 입장에서 문제 소지가 있음

이상민 : 의견을 드린 것임. 전문가에 의한 활용을 위해서임. 두 번째는 기록원과의 업무관계임. 서로간의 오해, 피해의식이 많음.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임. 법령상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 지도감독에 대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 기록원에서 정책수립을 할 때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구상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록원과 기록관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평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각급 기관의 고위직을 기록책임관으로 임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함

최재희 : 모든 위원들이 의견이 많으니까 정리 필요함

이상민 : 기록관에서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같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기관장에게 제안하는 의견도 있음

조영삼 : T/F에서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 기록관 논의를 보면서도 완성된 기록관은 별로 없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해야 할 것 같음. 이 문건이 그대로 나가면 현장의 전문가들의 반발이 있을 것임. 유사기능통합 등을 나열했는데,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못함. 이것은 소설임. 직접 와서 일을 해보셔야 함. 정보공개, 개인정보, 데이터관리, 보안 업무 다 하면 기록관리는 필수 업무가 아님.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설문원 : 수용하겠음

조영삼 : 공개재분류 정비는 동의함. 다만, '모니터링을 통해 공개분류 및 재분류가 실제로 적절히 작동하는지는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과 관련하여, 보완 조치가 필요. 전문 요원과 동일하게 기존의 공무원 중 정보공개전문관 제도를 도입 하자는 의견임. 실효적인 조치가 없으면, 재분류 하지 않음. 기존의 관행으로 돌아감. 취지를 살리되 구체적 조치가 필요. 8페이지 비공개 상태의 기록폐기 금지는 재분류 하지 말자고 하면서 비공개 기록 폐기 금지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 같음

설문원 : 이 부분은 좀 더 정비하겠음

김창조 : 개인정보와 같은 것에 대해 비공개의 상한을 정하면 반복된 기록물의 재분류는 필요 없다는 것임.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임

조영삼 : 비공개 되는 정보는 5호, 6호가 대부분임. 비율로 보면 약 15~16%임.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5호 내부검토과정 상의 비공개 기록임. 6호는 다른 논쟁 점이 있음

위원장 : 2분과의 과제 확정 필요

설문원 : 9개를 과제로 함. 좀 더 정리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음. 어떤 경우에는 1, 2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겠음

위원장 : 학문적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인 안으로 제시 바람

이상민 : 3분과는 과제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안은 확정하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결정하였음.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최근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함. 최근 세월호 기록 조작이 있음. 핵심은 지정제도임. 지정기록에 대한 해법이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름. 기존의 지정기록제도 논쟁점을 비교정리하고, 우선적으로 지정기록제도를 보완할 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임. 10월말까지 중간보고를 하겠음. 논의 사항들은 검토내용을 제안한 것임. 대통령 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은 지정기록과는 별개 분야로, 일반적인 대통령기록에 대한 문제임. 이것도 이관문제와 관련된 것임. 유고는 탄핵, 질병 등 가능한 한 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함.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 모델 정립은 디지털 아카이브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할 경우, 대통령 기록을 악용·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등을 검토하는 것임. 개별기록관 등까지 고려해 보려고 함.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술적 문제는 임진희 위원님이 따로 안을 작성하려고 함.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제도상 여러 현안들이 나오고 있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승인 받아서 외부적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검토해야 함. 전문가팀에서 입장을 냈으로써 해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는 의견의 일치로 보았음. 과제부분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추가하거나 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 지난번에도 이 과제를 다루었음. 의견 주시기 바람

설문원 :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지?

이상민 : 지금 논의 내용과 상관없이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처

리하려 함. 지정시점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설문원 :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이 있었음

이상민 : 전문직들이 전문의견을 냈다고 보여지지 않음

전진한 : 어제 세월호 부분도 발표가 되었지만, 캐비닛 문건 등 현안이 터졌을 때 T/F 차원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창조 : 법에서 가장 나쁜 일은 법을 악용 내지는 남용하는 사람들임. 지정기록물의 지정을 남용하여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됨.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범주 한정 필요함 것으로 생각함

위원장 :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을 9시 30분을 10시로 변경한 것을 우리 T/F차원에서 의견표명 가능한 것인지

전진한 : 현재 국감 등에서도 열람기록물, 지정기록물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한 역할이라 생각함. 아니면 위원이 의견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음

이상민 : T/F 위원이면서 협회 회장으로서는 인터뷰나 의견개진은 가능하다고 봄

위원장 : 어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이준식 위원도 위원자격으로 인터뷰 하였고. 정부위원회 위원이라고는 밝힘. 정부위원회가 하지는 않음

김창조 : 위원회는 일종의 행정기관임. 가장 특징적인 것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위원장 : 우리가 T/F 명의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각 위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은 가능함. 3분과 과제도 일단 7개로 확정하겠음

김형국 : 현재 대통령기록관리법의 개정 문제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명확화, 세부적인 부분 필요함. 이관절차에 관한 부분 등 처리 필요함. 법령과 매칭을 시켜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함

이상민 : 이관 관련 부분은 추가할지 처리 필요함

김형국 : 지정권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는지. 이관 절차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음. 이관 관련 부분의 명확한 법령정보 필요함

김형국 : 임기 종료 이후 이관이 법령상 규정이 없음. 그것을 포함해서 추가 이관의 주체, 절차 등 필요

이상민 : 들어가 있음. 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이 어떻게 개입할지, 법령 개정안 마련, 업무절차 상의 것은 권고안으로 해도 될 듯함

배이철 : 대통령기록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셨음. 결론은 없으나 다음 주 중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함

김형국 : 두 가지가 있음. 열 몇 건이 올라와 있음. T/F나 기록원의 대응을 위한 방침이 나와야 함. 어제 국감에서 캐비닛 문건 등 이관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음. 현안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승억 : 대통령기록관 자료는 확보하였음. 지금 이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음

김창조 : 3분과는 국회 논의보다 앞서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김형국 : 바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국감 후속조치로 작업할 것임. T/F에서 의견을 주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상민 : 다음 주 중에 방향을 제시하겠음

위원장 :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심성보 : 자료공유 문제임. 1분과는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지원팀에 메모보고를 통해 기록을 남겨주도록 함. 아직까지는 엑셀파일만 남고



있음.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해서도 문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2, 3분과에서 자료제출이나 문제점, 개선방안이 없는지 등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점검 필요

심성보 :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메모보고로 남겨 주었으면 좋겠음. 이 자료들이 모아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김형국 :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모이는 것의 의미도 있음. 건 바이건으로 계속 올리는 것 보다는 나중에 분류를 해서 한번에 등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떨지

심성보 : 나중문제임. 받고 저희가 바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총괄팀장까지 결재 후 케이스 별로 등록해 주시기 바람

김형국 : 파일들의 사이즈가 커서 쉽지 않음

심성보 : 서로 주고 받았다는 것을 남기는 것임. 비전자로 등록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케이스별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형국 :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 현문수 위원님이 오셨음

현문수 : 열심히 하겠음

안대회 : 다음 회의는 10월 27일(금) 10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통일실임